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79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기준 및 투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기준 및
투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창업투자회사 등의 임·직원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창업투자회사 등의 임·직원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 임용금지 조문을 삭제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영리업무 및 창업투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함(개정안 「붙임」)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14. 8.22(목)부터 '14. 9.20(토)까지

4.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042-481-4421)

전자우편 : ddd@smba.go.kr

『붙임』

중소기업청고시 제2014- 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기준 및 투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기준 및 투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임·직원의 겸직금지)를 삭제한다.

제9조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직원은 소관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하거나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8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p> <p>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개정 2008.8.25></p> <p>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p> <p>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개정 2008.8.25></p> <p>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p> <p>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p>	<p>제8조 <삭 제></p>
<p>제9조(임·직원의 행위준칙)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2. 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p>	<p>제9조(임·직원의 행위 준칙)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p>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3.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든 본인의 계산으로 업무상 관련 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p> <p>4. 임·직원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p> <p>5.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p>	<p>3. <u>임·직원은 소관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아야 한다.</u></p> <p>4. ----- ----- ----- -----,</p> <p>5. ----- ----- -----,</p> <p>6. ----- ----- ----- -----,</p>